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이정희 의원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이정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

발 의 자 이정희 의원(1인)

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

김재우·이명희·장미경·추은희

의원(8인)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창조력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및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5조)

라. 지역거점 구축(안 제6조)

마.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바. 지도·감독(안 제8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나. 부서검토: 문화예술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구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 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구미시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및 학교·지역 연계 협력 지원
4.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5.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희공간 발굴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2항의 사업을 구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재양성교육 강화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조 례 명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 주요 사항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5조)
- 지역거점 구축(안 제6조)
-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 검토 결과

-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거점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확보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안 제6조: 문화예술교육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구축
- 안 제7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의안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김명동(☎054-480-6602)